

V. 안전사고 대응 규정

제1장 총칙

- 가. **(목적)** 이 규정은 (주)클린포트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나. **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

- 가. **(사고의 구분)** 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경미한 사고 :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사고
 2. 산업재해: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
 3. 중대재해: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써,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,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- 나. **(긴급조치)**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
 2.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
 3.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
 4.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
- 다. **(사고조사 및 보고)** 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,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,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즉시 병원,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③소관부서장은 사고현장을 원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

담당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
2. 조치 및 전망
3. 기타 중요한 사항

⑤1, 2급 사고의 경우에는 소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사고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30호서식]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.

⑦안전관리 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.

⑧소관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처리 결과를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
라. **(사고분석 및 대책)** ①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
②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,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이 규정에 관련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다.